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5-10-21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5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5누4186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원고, 항소인	A
피고, 피항소인	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
제 1 심 판 결	서울행정법원 2015. 4. 10. 선고 2014구합19346 판결
변 론 종 결	2015. 8. 26.
판 결 선 고	2015. 9. 9.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14. 9. 19.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5,968,200원(가산세포함), 지방교육세 511,560원(가산세포함), 농어촌특별세 341,040원(가산세포함)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5-10-21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, 제1심 판결서 제5쪽 제11행의 '보이는 점' 다음에 아래 제2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추가하는 부분

'[한편, 외국인토지법상 토지취득의 허가에 관한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, 이 사건 증여계약이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(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이 아닌 계약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)일 경우에는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(대법원 1991. 12. 24.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참조).]'

3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성백현

판사 왕정옥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5-10-21

판사 채동수